

‘건물 임대차 20년 제한’ 위헌 이끌어 내

“헌법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넘어 법과 제도가 헌법에 합치되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.”

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년 이하로 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. 현재는 이 조항이 긴 임대차 기간으로 임차인의 건물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. 현재의 결정으로 앞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. 이 결정을 이끌어 낸 박성철(39·사법연수원 37기·사진) 지평 변호사는 “50년 이상 유지돼 온 기본 법인 민법 조항, 특히 채권법 분야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”이라며 “이번 위헌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준 것도 좋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장기 투자가 늘어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”고 말했다.

박 변호사는 “실력과 인품이 훌륭해 본받고 싶은 선배님, 능력 있는 동료, 신선한 자극을 주는 후배들과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어 결과가 나왔을 때보다 소송을 진행할 때 더 큰 행복을 느꼈다”고 말했다. 지평 헌법 소송팀은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면 팀 세미나에 사건을 상정해 활발한 토론을 한다. 갓 입사한 신입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을 역



50년 이상 유지 채권법서 위헌결정은 매우 이례적 일찍부터 헌법재판 관심 연수원생 시절 해설서 내 개인의 권리 구제 넘 법·제도 발전에 기여 매력

임한 대표변호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아이디어를 모은다. 지평은 지난 3년 동안 팀 세미나를 47번 열었다. 박 변호사는 “지평 헌법소송팀의 이런 토론 방식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”이라고 강조했다.

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부터 헌법재판에 관심을 가졌다. 연수원 2년차 때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해설한 ‘헌법줄게 새법 다오’를 출간했다. 가장 의미 있는 사건도 헌법재판 사건을 꼽았

다. 2012년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 821명이 2013년 1월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다. 박 변호사는 연수원생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을 대리해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. “이 결정으로 42기생들이 즉시 판사로 임관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게 돼 무척 뿌듯했어요.”

박 변호사는 “헌법재판은 경제, 정치, 사회, 문화를 아우르는 접근이 요구되고 비교법적 연구가 강조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샘솟게 한다”며 “올해는 영국에서 규제법과 국제 규범, 국제 분쟁 등에 대해 더 공부할 계획인데, 각종 산업 분야에서 행정권이 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며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”고 의욕을 보였다.

이장호 기자 jangho@lawtimes.co.kr